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0241-01

...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

결과발표 및 토론회

- ❑ 일시_ 2010. 4. 27. (화) 14 : 00
- ❑ 장소_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 ❑ 주최_  국가인권위원회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문경란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시어 오늘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9. 3. 여배우 故 장자연씨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여성연예인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와 왜곡된 성접대 문화의 일면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연예인의 인권침해 문제는 실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의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연예인의 인권침해상황을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여성연예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조사의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통하여 관계자 및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인권침해 실태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들의 필요성 및 현실성에 대하여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의 고견이 모여 여성연예인 인권개선을 위한 자그마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문 경 란



▶▶▶▶ 토론회 일정

- 일시 : 2010. 4. 27.(화) 14:00 ~ 18:00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0층)
- 진행순서

시간	순서	내용	비고
14:00 ~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인사말 ■ 사회 	문경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14:40 (20분)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수연 실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사회통합연구실)
~ 15:00 (15분)	토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연예인 인권개선에 대한 일반적 제언 	유지나 교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 15:15 (15분)	토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연예인 인권개선을 위한 과제 1 (여성연예인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제·개정을 중심으로) 	이동연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 예술원 한국예술학과 교수)
~ 15:30 (15분)	토론 3		박형동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15:45 (15분)	토론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연예인 인권개선을 위한 과제 2 (여성연예인 인권관련 당사자들의 과제를 중심으로) 	문제갑 정책위원회 의장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 노동조합)
~16:00 (15분)	토론 5		김승수 사무총장/PD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 16:15 (15분)	토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연예인 인권개선을 위한 과제 3 (여성연예인 인권개선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대오 기자(노컷 뉴스)
~ 16:30 (15분)		휴식	
~ 17:00 (30분)		종합토론	

<<<< 목 차 >>>>

❖❖ 발 제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사회통합연구실장)

❖❖ 토 론

1. 여성연예인 인권개선에 대한 일반적 제언

유지나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2. 여성연예인 인권개선을 위한 과제 1

- 여성연예인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제·개정을 중심으로

○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 교수)

○ 박형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3. 여성연예인 인권개선을 위한 과제 2

- 여성연예인 인권관련 당사자들의 과제를 중심으로

○ 문제갑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정책위원회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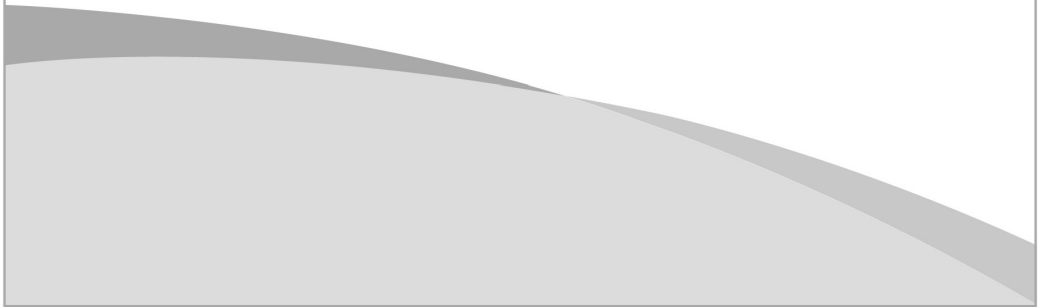
○ 김승수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PD)

4. 여성연예인 인권개선을 위한 과제 3

- 여성연예인 인권개선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 김대오 (노컷뉴스 기자)

발제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사회통합연구실장)



I. 여성연예인 인권침해의 배경과 현실

1. 가부장적 문화

여성연예인의 인권침해는 가부장적 문화와 연예산업의 자본주의적 구조와 관련된다. 가부장적 문화 하에서 여성연예인은 성적 대상으로 간주된다. 여성연예인들은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서 소비되며 남성의 성적 시선을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이들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서보다 수동적인 대상으로서 효용성을 갖게 된다. 이처럼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대중매체의 속성과도 연관된다. 여배우를 보는 업계 안팎의 시선이 근본적인 성적 대상화라면 여성연예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구조로 작용한다. 이처럼 가부장적 문화가 관행으로, 관행이 구조로 이어지는 연예계에서 여성연예인의 인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다.

또 심각한 것은 여성연예인의 성적 침해는 이들의 일과 관련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여성연예인들은 직업인들인데 일을 유지하기 위해 성적 침해를 용인해야 된다는지, 혹은 성적 침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 모두 이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2. 연예인의 노동자성 인정

현재 우리나라는 연예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즉, 연예인은 흔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간주하여 이들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보호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현재 노동계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연예인에 있어서는 이들이 흔히 기획/매니지먼트사와 맺는 전속계약의 성격에 따라 노동자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14조)”를 근로자로 규정함으로써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리고 종속적

인 관계인가를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규정한다.

연예인의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은 종속관계의 성격이 크다. 기획사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인 연예인들은 힘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기획사에 종속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연예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을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임금보호, 근로시간, 유급휴가, 산업안정 및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사회보호법 적용, 그리고 연예인 노조의 지위향상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관해서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지켜져야 한다.

3. 연예산업 구조와 외국 사례

연예산업 안의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문제들-연예인 지망생의 과다 공급, 스타의 희소성, 기획/매니지먼트사의 취약한 수익구조와 영세 기획/매니지먼트사의 난립, 그리고 매니저와 브로커를 자칭하는 사기성 인물과 조직들-은 연예인들이 불공정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게 하고 상습적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더 나아가 스폰서의 관계까지 종용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연예인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예산업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에이전트 규제법과 노조의 존재이다. 미국의 에이전트법은 에이전트 라이선스 취득에서부터 수익의 분배, 그리고 출연료 지급방법에까지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연예인들이 기획사, 매니지먼트사로부터 출연료를 착복당하고 자질없는 매니저 등에게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러한 연예 에이전트 규제법은 벤치마킹할 가치가 크다 하겠다.

다음으로 강력한 노조의 존재이다. 미국 연예산업에서 노조는 연예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이다. 미국에서는 연예인과 에이전트 사이의 구두계약도 인정하는데 이것은 연예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프랜차이즈 계약 등 연예인 전체의 권리를 대변하는 노조의 존재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외국의 시스템에서 시급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에이전트 규제

법과 연예인 노조 제도의 활성화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파견근로자 알선업에 대한 규제법은 있으나 여기에 연예인에 대한 조항은 없다. 따라서 에이전트 규제법을 포함한 연예인육성·관리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II. 조사 결과

1. 기획사

기획사에 의한 여성연예인 인권 침해는 크게 사기·불공정 계약에 의한 노동권의 침해, 외모에 대한 간섭·성형수술 강요 등 신체적 침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침해로 구분된다.

노동권의 침해는 지망생이나 신인연예인들에게 집중된다. 이는 사기성 계약을 비롯해 해당 연예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관련 사례들은 기획사의 자의적인 계약서 수정 등 일방적인 일처리 관행들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연예인의 외모에 대한 과도한 관리도 문제였다. 이는 단순히 사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외모에 대한 단순 평가가 아니라, 일의 매개가 되는 중요 자원인 외모에 대한 공식적 평가라는 점에서 당사자에게는 더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된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성적 침해 문제였다. 기획사는 때로는 직접적인 성적 침해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간접적인 매개자가 되기도 했다. “데뷔를 시켜준다”거나 “뜨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토대로 가해지는 성적 침해는 개개인이 물리적으로 대응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다. 대부분의 여성연예인은 이러한 폭력 앞에서 무기력한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2. 제작사

연예산업에 있어 가장 우위를 점하는 위치가 바로 PD, 작가 등을 포함한 제작자 그룹이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출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현장에서 출연 분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들과 여성연예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는 캐스팅의 공정성과 관련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여전히 캐스팅이 매우 비공식적인 형태로 관리되고 있었다. 캐스팅 디렉터처럼 새로운 직업의 분화가 나타나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는 기능적인 측면이지 권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PD 스스로도 여전히 캐스팅에 대한 권한은 최종적으로 PD와 유력 작가들에게 있다고 언급한다.

많은 여성연예인들이 이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제작자와 커다란 격차를 보인다. 여성연예인들은 공정하지 못한 캐스팅의 과정으로 인해 (술)접대, 성상납, 뇌물, 여성의 인권침해, 그리고 연예인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캐스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강도 높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 스폰서

연예인 혹은 연예기획/매니지먼트사의 수익구조는 취약하다. 이러한 연예산업의 특성과 교묘히 결합되어 있는 것이 스폰서의 존재다. 이는 연예인 개인 및 연예산업의 불안정성과 연결되어 연예인 개인의 인권을 위협하고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심층면접에 응한 연예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파티 참석, 술자리 접대, 스폰서 제안 등은 주로 지방생이나 신인 시절에 집중되는 편임을 알 수 있다. 젊은 여성연예인들이 이런 제안이나 요구를 받게 되는 이유는 여성으로서의 외모나 성적 매력 뿐 아니라 연예인의 특별함이 사회 유력 인사들의 ‘차별화된 과시적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폰서 관계를 매개하는 만남은 연예계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매우 일상적이며

빈번하다는 것이 심층면접에 응한 이들의 공통된 평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연예계의 스폰서 관행을 모르는 연예인, 업계 종사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은 이러한 스폰서의 관행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말해주고 있다. 차이는 스폰서 제안을 직접 받았는지 여부와 수락했는지 여부에 불과하다.

이번 심층 면접에서 확인된 극단적 사례로는 재정상황이 부실한 기획사가 여성 연예인을 매개로 스폰서의 지원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였다. 이는 스폰서가 이 회사의 실질적 물주가 되고 해당 여성연예인은 기획사와 자신의 성공을 담보로 ‘ולם 겨자 먹기’식의 스폰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다. 이런 경우는 해당 연예인이 성매매를 통해 소속사를 먹여 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4. 언론과 대중

언론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 근거 없는 비방, 그 안에 담겨진 차별적이고 이중적인 시선의 문제는 여성연예인의 삶 그 자체를 위협하고 파괴하게 만들고 있다. 무차별적 비난을 쏟아내는 대중들의 악플 폐해 또한 그러하다.

더구나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로 놓이게 되는 차별적 상황은 인권 침해를 더욱 가중시킨다. 비록 직접적인 차별이나 성적인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여성연예인은 양가적인 시선의 굴레와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때문에 같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남성에 비하여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의 잣대가 더욱 가혹하다.

대중과 언론의 시선에 노출된 연예인들은 찬사 뿐 아니라 비난에 있어서도 보통 사람과 구별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폐쇄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아예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는다는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일어나는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III. 연예인 인권침해의 구조와 유형

여성연예인 인권침해의 상황들이 어떤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여성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사회전체의 왜곡된 성문화의 영향과 연예인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고 반면에 스타는 부족한 연예인 수급구조의 불균형과 관련된 연예산업의 구조적, 조직적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다.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지점은 <그림>의 A, B, C이다.



<그림> 연예인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지점

먼저 연예매니지먼트사 관련 문제이다.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단 스타로 부상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연예인 육성/관리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고 진입에 특별한 장벽이 없어 영세한 기획사 혹은 매니지먼트사가 난립하고 있다. 또 이들의 관리자로서의 자질도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지도 않는 유명업체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연예인 지망생의 입장에서는 기획사를 거치지 않고는 연예인이 되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사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따라서 기획사의 연예인에

대한 힘의 우위가 일방적으로 커서 기획사의 권력화가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 이들 사업이 수익구조가 취약한 것도 문제이다. 기획사가 연예인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하도록 기대되는데 연예인의 수입은 확실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제작사 관련이다. 연예인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작사 관련자들도 기획사에 못지않다. 이는 캐스팅이 연예인들에게는 생명선인데 이들이 캐스팅의 절대적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PD에게 캐스팅의 대부분의 권한이 주어진다. 물론 방송사 고위직, 때로는 정재계의 권력자도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캐스팅이 공개 오디션 등의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비공식적인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중과 언론이다. 대중과 언론은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다보니 곧잘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을 호기심 혹은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다. 과격한 팬들은 이들에 대한 관심을 스토킹 같은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보통 사람들도 인터넷에 이들에 대한 악플을 올리거나 이들의 신체적 조건이나 외모에 대해 지나친 평가를 하여 자존감을 해치기도 한다. 또 팬의 왜곡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스폰서의 존재도 이들의 성적 자존감이나 결정권을 침해한다. 언론은 여성연예인을 상품화하는 역할을 한다. 언론은 이들의 사생활 정보를 상품으로 팔든가 이들의 몸을 시각적으로 상품화하기도 한다. 이처럼 육성/관리자인 연예 기획/매니지먼트사, 학원, 그리고 제작자인 방송사나 외주제작사의 PD, 방송 고위직, 작가들, 마지막으로 대중, 언론, 스폰서로 구성된 소비자가 모두 여성연예인의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주체들이다.

이처럼 산업 구조상 A, B, C 지점에서 여성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거시적인 가부장적 성문화와 연예산업에서의 연예인 수급구조의 불균형은 각각 주체와 관련해서 인권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하부구조를 만든다. 이 하부구조와 앞에서 서술한 4가지 인권침해의 범위-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몸의 자기결정권 침해, 노동권 침해, 사생활권 침해-에 따라 여성연예인의 인권침해의 유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체별 산업, 문화적 문제 요인	인권침해의 유형			
	성적 침해	몸의 결정권 침해	노동권 침해	사생활권 침해
기획· 매니지먼트사				
°영세업체 난립	°성적 착취		°과도한 기회 비용 °불공정 계약 °성적 착취 °수입 착취	
°취약한 수익 구조				
°사기성 회사	°성적 착취		°캐스팅 관련 사기	
°기획사 권력화	°성희롱, 성폭력	°성형수술, 다이어트 강요	°과도한 기회 비용 °불공정 계약 °성희롱, 성폭력	°사생활 구속/ 간섭
제작사				
°비공식적 캐 스팅	°성희롱, 성적 착취		°캐스팅 대가 로 금품 요구	
°PD의 권력화	°성희롱	°성형수술, 다이어트 강요	°성희롱	
연론, 대중				
°연예인에 지나 친 관심, °연예인 상품화		°연예인 신체 적 조건에 대 한 비판	°악플 달기 °스토킹	°연예인 사생활 폭로/ 루머나 개 인적 정보 유포 °악플 달기 °스토킹
°연예인 성적 대상화	°스폰서 제안 및 과 도한 성적 요구			°연예인 성적 소비 (섹스 비디 오 등)

연예인
수급
구조의
불균형

가부장적
성문화

〈그림〉 여성연예인 인권침해의 구조와 유형

즉, 인권침해의 유형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주에 성적 착취, 성희롱, 스폰서 제안 및 과도한 성적행위 요구, 몸의 자기결정권 침해 범주에 성형수술, 다이어트 권유/강요, 연예인 신체조건에 대한 비판, 노동권 침해 범주에 과도한 기회비용 지불, 불공정 계약, 캐스팅 대가로 금품요구, 캐스팅 관련 사기, 그리고 과도한 악플달기, 스토킹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생활권 침해 범주에 사생활 구속/간섭, 사생활 폭로, 루머 유포, 개인적 정보 유포와 소비 등이 있다. 여기서 성적 착취라 함은 여성

연예인에게 술자리 시중, 성 접대 그리고 술집 나가기 등을 요구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성적 침해와 노동권의 침해에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여성연예인의 경우 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성적 침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 두 침해가 연결이 되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악플달기와 스토킹도 사생활권 침해와 노동권 침해에 중복적으로 속하게 된다.

→ VI. 정책 제안

앞에서 본 것처럼 여성연예인의 인권은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여성연예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소지를 만드는 것은 가부장적 문화와 업계의 관행, 그리고 시장 구조 등에 연유하는데 인권침해를 직접적으로 자행하는 주체는 연예인 육성/관리자, 제작자, 그리고 대중과 언론이다. 따라서 개선의 방안은 이들 주체들을 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연예기획/매니지먼트사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어 법적 규제와 함께 자정노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이들이 연예산업의 중요한 동력이 되는 연예인을 키운다는 점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따라서 연예인 육성관리사업의 진흥법을 제정해서 이들의 자격이나 자금 조건을 규정함과 동시에 지원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는 연예인의 관리를 규정할 수 있는 법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도이다.¹⁾ 두번째로 PD를 비롯한 제작사의 변화가 여성연예인 인권보호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전술했듯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에서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21>

이 캐스팅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여기에 제작자의 권력이 중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여성연예인의 성적 인권침해나 노동권의 침해를 막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PD와 제작자는 이들 중 일부의 탈선으로 인해 전체가 피해를 당하는 입장이므로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이미지 쇄신을 해야 할 동기를 가질 것이다. 제작자와 PD의 주도하에 다른 주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정 노력을 벌이는 것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동시에 모든 PD나 제작자들이 이런 인권침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성연예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대중과 언론도 직, 간접적으로 여성연예인의 인권침해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팬문화나 보도문화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자성노력을 벌여야 한다.

1. 연예매니지먼트사업 진흥법 제정

연예매니지먼트사업 진흥법은 연예매니지먼트사의 관리와 함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매니지먼트사가 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 최소 출자금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계약시 표준계약서 사용이나 변호사 지원 규정, 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의 형성과 기능, 그리고 지원방법을 명시한다.

1) 연예매니지먼트사 라이선스 규정

현재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매니지먼트사를 설립할 수 있어 적절한 자본이나 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뛰어들고 영세 기업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들은 재산성이 없으며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결국 연예인 지망생들의 임금을 착복한다든지 무리한 계약 관행을 유발하고 여성연예인을 통한 스폰서 유치 등을 통한 성적, 경제적 인권침해의 배경이 된다. 따라서 매니지먼트·기획사를 정비하고 일정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에서처럼 기획 업무를 맡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를 발행하여 라이선스를 소지한 에이전트가 있어야만 기획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 논의는 불공정 관행 등 국내 연예산업의 문제가 불

거지면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기존 업계 종사자들의 반대에 직면해 유보된 것으로 알려진다. 앞의 미국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라이선스의 취득이나 유지에 대한 조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최소 2년 간의 같은 업종 종사 경험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또 면허발급시의 조건이 변화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기획사들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이들을 항시 감독할 수 있는 전담 정부조직이 노동부(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체육부의 협조)에 만들어져야 한다.

일정 관리, 운전 등 연예인의 일상 활동을 지원해주는 매니저 업무는 면허가 없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법적으로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매니저 지위만으로는 법적 대리인을 할 수는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이 외에도 미국 에이전트 규제법을 참고로 하여 기획사의 운영에 있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제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예인들에게 고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정보를 알리지 못하게 하고, 이들을 건전하지 못한 장소, 주점, 샬롱 등에 파견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들의 수입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며 이를 입금된지 일정 기간 내에 연예인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기획사가 여성연예인을 착취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빈틈없는 예방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의 마련은 건전하고 내실 있는 기획사를 중심으로 한 시장을 안정화 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연예산업을 발전시키고 연예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어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최소 출자금 규정

앞의 피해사례들을 보면 기획사나 매니지먼트사의 재무상태의 취약성이 결국 연예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예사업 자체가 투자에 대한 환수가 보장되지 않는 위험성이 큰 사업인데다가 출발부터 영세한 자본으로 시작할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와 고객인 연예인의 상황이 불안정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피해사례에서 여성연예인의 경우 이러한 회사의 유지를 위해 술집에까지 나가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출자금 제한은 없지만 보증증권제도가 있어서 연예인의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일정액의 증권을 구입해야 한다. 기획사와 매니지먼트사의

사업 등록시 일정한 출자액을 가질 것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업체의 난립과 여성연예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계약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표준계약서(부록 4 참조) 작성은 연예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 방법이다. 따라서 연예인 육성관리법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대부분이 지망생 단계의 연예인들이고, 이들은 표준계약서의 존재 자체를 모를 수 있고 이러한 연예인 지망생들은 법적 대리인을 스스로 동반하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다. 이들은 계약서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아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어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약자의 위치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많은 경우 인간적인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계약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도 한다. 이에 이들의 계약을 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적어도 활동 3년 미만의 신인들이 기획사와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가 임회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범위에 입문하지 않은 지망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입장에서 엄격한 검토를 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수급이다. 기획사를 위해 계약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는 많겠지만 연예인 지망생의 권리를 꼼꼼히 검토해 줄 변호사는 많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또 계약건수의 문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이에 법률 구조의 성격으로 공적 체계의 지원을 받거나 노동조합 등 관련 협회에서 이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의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비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많은 인권침해의 근거가 바로 지망생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노예계약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연예인의 경우, 계약서를 통해 스폰서와의 위계를 합법적으로 매개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4) 협회를 통한 지원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연예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다. 한류 현상에서 보듯이 연예인은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확산에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연예인의 산업적 가치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은 연예산업 중에서도 대단히 불안정한 영역이다. 전술했듯이 수입모델이 뚜렷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상태가 취약하여 수많은 영세업체들이 부침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불안정성은 연예인의 복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개별적으로보다는 협회 같은 공인된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모든 연예매니지먼트사가 한, 두 개의 협회에 속함으로써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 협회를 통해서 연예인들의 교육과 지도도 이루어질 수 있다.

지원은 협회에 속한 업체에 한해서 문화기금 지원, 소양 교육, 외국 시장 진출 지원, 그리고 일정 매출에 도달할 때까지 법인세 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2. 제작자 중심의 협의체 구성

여성연예인 J씨 사건으로 불거진 연예계의 고질적 관행들은 적어도 이 분야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이들로부터는 오랜 관행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이 심각한 문제라든지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는 많지 않다. 오히려 연예인 지망생 개인의 부질없는 욕망이 초래한 결과로, 그 피해 또한 철저히 개인의 몫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관련업계의 남성중심적인 관행과 밀접히 맞닿아있다. 이에 여성연예인을 둘러싼 인권 침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협회들의 인식 변화와 도움이 절실하다. 또 여성연예인의 인권침해의 가해자이기도 한 방송국 등 제작관련자들의 사태인식, 반성 및 참여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도움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결국 개인의 피해만이 고스란히 남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사안도 인식의 변화에 따라 달리 바라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예방의 수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방송사, 제작자협회, 매니지먼트협회, 에이전시협회, 광고주협회, 한국방송영화 공연예술인노조, 국가인권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관행 속에서 여성연예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가이드라인의 작성에는 여성연기자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협의체는 관련 업계에 만연한 남성중심적이고 위계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정도를 평가하며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계약 및 임금문제, 오디션이나 캐스팅과 관련한 문제, 성희롱예방 의무교육 문제 등 관련 종사자 교육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그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 등을 줌으로써 업계 스스로가 이 문제를 개선해나가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3. 연예인의 자구 노력

연예산업 내부의 문제점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연예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연예인들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노력이 없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앞의 조사에서도 여성연예인들의 상당수가 현재 상황의 개선을 위해 여성연예인 스스로의 의식개선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즉, 여성연예인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의제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져야 한다. 따라서 여성연예인 차원에서는 여성연기자 협회(가칭)를 설립하여 자구의 노력을 펼쳐야 하고 또한 연예인 전체로서는 노조 차원에서 인권제고 교육과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대중적 영향력이 큰 원로급과 스타급의 여성연기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II장에서 서술했듯이 미국 연예인 노조가 힘을 갖게 된 것은 유력한 스타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여성연기자 협회를 이끌어가야 이 단체의 효용성이 보장될 것이다.

1) 여성연기자 협회 설립

여성 연기자 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가) 민원 창구 및 카운슬링 창구 개설 및 운영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 여성연예인들은 문제 현실을 만나도 이를 의논하거나 함께 해결할 만한 상대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이를 혼자서 감당하고 체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하다 보니 이에 대한 대응 또한 매우 소극적이다. 개인적으로 부딪혀봤자 캐스팅 불이익 등 개인적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감이 일상적 인권침해에 대해 순응과 타협으로 대응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민원 및 카운슬링 창구를 개설하는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울증 등에 빠지기 쉬운 상황을 예방하고 조직적으로는 여성연예인들이 처한 현실을 객관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의혹으로 가득 찬 사회 일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위계에 의한 인권침해의 현실을 알리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멘토 시스템 도입을 통한 선후배의 유대강화 및 협조체계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로 시작해 개인의 문제로 끝나버리는 현실은 연예인지망생들이 처음부터 똑같은 문제를 다시 겪게 만드는 악순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잊을만하면 비슷한 방식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여성연예인이 다시 나타나고 그 간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이처럼 반복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멘토 시스템의 도입은 흩어져 있는 여성연예인들의 삶을 공동의 관심사로 묶어 선배 연예인들의 좋은 경험은 전수하고 나쁜 경험은 극복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물론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선후배 관계 또한 경쟁관계일 수밖에 없는 연예계의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인텐티브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마치 연예인 노동조합 간부들이 캐스팅 기회를 부여 받는 것과 직접적 방식에서부터 각종 지원 우대 등 간접적 방식까지를 아우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지원 외에도 존경받는 선배 연기자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참여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제야말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선배들이 힘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다.

다) 신인 연예인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분기별 교육 실시

멘토 시스템 운영이 일상적인 활동이라면, 오리엔테이션 및 분기별 교육은 정례 교육의 성격이다. 무엇보다도 여성연예인 스스로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모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으로서의 자각과 자신감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다양한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적어도 상황을 몰라서 대응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극히 개인화되어 있는 여성연예인들의 삶을 반영하여 연예인 인권현장이나 가이드북, 해설 동영상 등을 만들어서 널리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홍보나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남녀연예인 대상 인권 교육 강화

연예인들의 인권의식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는 제작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개인화되는 작업환경은 이러한 상황을 일반화시키고 있다. 여성연예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남성연예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정례화하고 더불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예계 내 전반적인 인권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집합교육 등 오프라인 교육 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예조와 국가인권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된다 하겠다. 또 불공정 계

약이나 그로 인한 부당 처우, 대규모 임금 체불 등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 등에 대한 연예인 노동조합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방법으로는 연예인들이 모이는 총회 등을 이용하여 집합교육을 하거나 사이버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자기교육을 하는 것 등이 있다.

4. 팬문화와 보도문화 개선

1) 언론의 중재

현재 우리의 팬 문화는 열정적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극단적이고 때로는 파괴적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특히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일부 팬들의 행태는 극단적인 경우 범죄행위에 해당하기도 한다.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악플이나 악성 루머의 유포 등이 이러한 경우이다.

때문에 이러한 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팬들 자신의 자성도 필요하지만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언론의 중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언론에서는 팬덤 문화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열고 건전한 팬 문화에 대한 캠페인을 벌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문화 개선을 위해 연예인 스스로도 명예훼손분쟁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응함으로써 이러한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팬들의 자성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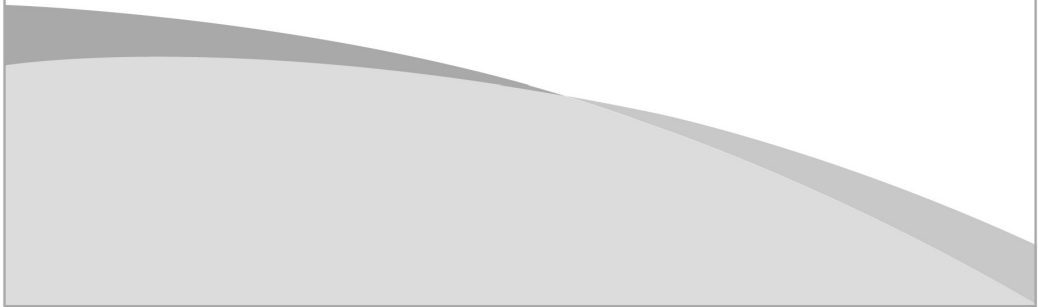
스타들의 팬클럽 등은 사실 스타들의 행복을 가장 바라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때때로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위해 다른 연예인을 공격하고 해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 이들은 건전한 팬 문화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팬클럽을 중심으로 이러한 자성노력을 보이고 이를 다른 팬들에게도 전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9년에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은 스타들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다. 이를 계기로 삼아 팬들은 올해 팬문화 정화의 해

로 삼아 자성의 캠페인을 벌일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가 필요하다. 또 청소년의 공교육 과정에 미디어와 팬문화 이해에 대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스타덤과 팬덤이 청소년들의 의식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의 현실에 준비시켜야 한다.

3) 언론의 자성 노력

오늘날 여성연예인의 인권침해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진데는 언론의 책임도 묵과할 수 없다. 언론은 피상적이거나 선정적인 보도태도로 여성연예인을 상품화하고 성적 대상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성적 대상화는 근래에 와서 더욱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텔레비전 출연자의 연령이 어려워지고 있어 미성년 연예인들의 인권보호가 문제가 된다. 또한 케이블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선정도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이다. 여성연예인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언론이 먼저 자성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미디어 옴부즈만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여성연예인의 인권침해에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토론1



여성연예인 인권개선에 대한 일반적 제언

유지나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여성연예인 인권개선에 대한 일반적 제언

유지나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연구’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수행된 중요한 연구작업으로 보인다.

그간 여성연예인의 연쇄 자살사건을 비롯한 피해사례의 강도와 여파에 비해 뒤늦게 이루어진 연구지만, 여성연예인 관련 사태의 심각성과 제도개선 및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필수적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연예인이란 직업에 대한 편견과 환상등이 작동한데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권력자 혹은 고위직에 대한 성상납 관행이란 치명적 문제가 결합하여 연구대상인 연예인 당사자들이 현실을 제대로 털어놓을수 없는 자기검열과 침묵의 카르텔이 연구과정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실태조사 연구는 매우 힘든 과정일 것이라는 점을 가늠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연구원들의 노고를 평가하며, 이후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조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우선, 첫 항목인 ‘여성연예인 인권침해의 배경과 현실’에서 각 항목의 표제와 맥락이 엇나가거나 대안까지 한꺼번에 제시되어 혼란이 초래된다. 이를테면, 구체적인 인권침해의 배경과 현실로 ‘1.가부장적 문화’를 제시한 후, ‘2. 연예인의 노동자성 인정’같은 대안제시가 드러나고, 이어서 외국사례 비교와 벤치마킹 주장을 하는 것은 표제의 제목과 취지를 넘어서는 전체 개괄로 보인다. 이 부분을 제목에 맞는 구체적인 현실적 배경을 탐구하고 이슈화하는 것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결말부인 정책대안에 해당하는 ‘여성연기자 협회’는 여성연예인 모임으로 확대

하여, 연기, 음악/가수등으로 장르별 구획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여성연예인 인권문제는 굳이 연기자에게만 국한되기 보다 가수나 대중연예계에 속하는 다른 분야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최근 장자연문건으로 인한 검찰의 사건조사를 비롯하여 그간 발생한 여성연예인 관련 특히 성폭력을 동반한 비리사건을 기존 검찰조직이 아닌 특검이나 청문회와 같은 형태로 재조사하여 여성연예인과 성상납이라는 반인권적 관행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법적 결과가 나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22일 ‘PD수첩’에서 보여준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로 인해 성상납이라는 고질적 병폐가 다시 거론되는 상황에서 룸살롱의 접대 여성과 여성연예인이 입장이 유사하게 돌아간다는 점을 주목해보면 한국사회의 과도한 섹스산업과 남성 권력자 중심의 성매매구조와 사태의 문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번 계기에 여성연예인이 섹스산업과 결탁하는 고리를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

》》》》 토론 2



여성연예인 인권개선을 위한 과제 1

- 여성연예인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제·개정을 중심으로
 -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 교수)
 - 박형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제안

이 동 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1

여성 연예인 J씨 사건을 기점으로 한국 연예인들, 특히 여성연예인들의 인권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이 늦었지만,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라도 발표될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여성 연예인의 인권 문제가 일차적으로 연예산업의 체제 안에서 벌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기기관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거나 심지어는 불필요한 개입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연예인과 관련된 인권 침해의 사건들이 연예산업의 전근대적인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한 간접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연예인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여성 연예인 인권의 문제가 연예산업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여성이라는 개인, 혹은 사회적 주체의 ‘인권’을 다루는 것이라면, 국가 인권 기구와 해당 기관이 중심이 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충분히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오래 동안 연구와 조사를 통해 이번에 공개하는 “여성연예인 인권 침해 실태조사”는 그동안 사적인 영역을 통해서 일종의 “연예담”으로 쉽게 보거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미디어가 이슈화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실

태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공론화하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논평자는 이 실태보고서의 요약문 중에서 정책제안으로 제시된 내용에 대해 언급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평소에 제안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 1) 먼저 가칭 “연예 매니지먼트사업 진흥법”(이하 진흥법) 제정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진흥법이 연예인 인권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인권 침해의 원인이 대부분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연예제작 시스템에 있는 만큼, 간접적인 대안으로 마련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진흥법은 연예산업이나 연예제작 환경을 국가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지나치게 위축하거나 규제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제정되기보다는 연예산업의 활성화하고 양성화하는 지원정책과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흥법이 물론 연예인 인권침해로 인해 법제정이 요구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연예산업의 활성화와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지원정책과 연예산업의 투명화 합리화라는 규제적인 사안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구체적인 사안들은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담고 있긴 하지만, 연예산업 시스템을 선진화하려는 대안들은 구체적이지 않다.

연예 매니지먼트에 대한 라이선스 취득에 대한 의무규정도 부분별한 연예기획사의 범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지만, 라이선스 취득에 필요한 요건과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명시함으로써 라이선스 취득의 제도화가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이선스 취득 요건에는 설립의 자본규모나 자격취득을 위한 소정의 절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연예산업 종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문화적, 윤리적 태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진흥법에는 무엇보다도 연예인이 인권의 주체, 혹은 연예인으로서의 주권을 보장하고 권장하는 이념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최근 문제가 되는 표준계약서에도 인권침해에 대한 제제조항들에 대해 연예인의 입장에서 구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의 과정에서도 연예인(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을 대리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참여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2) 협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현재 연예인들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협회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협회를 통한 여성연예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고서의 제안대로 여성연예인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각 협회(방송사, 제작자협회, 매니지먼트협회, 에이전시협회, 광고주협회,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조, 국가인권위)간의 연대모임의 구성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상시기구로 두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해당 업계가 중심이 되어 모인 협회 중에서 여성 연예인의 인권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 해당 기구들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 3) 여성 연예인의 연예활동과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 문제 구제하는 여성연예인들 간의 자발적인 조직은 필요하다. 다만 현재의 여건 상 이러한 취지를 걸 맞는 협회를 구성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여성연예인들의 심리상당, 계약 문제, 인권침해, 성적 피해, 교양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는 필요하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러한 기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예산업 전체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유명 여성 연예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여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4) 여성 연예인들의 성적, 언어적, 정신적 침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하게 혹은 왜곡되어 재생산되지 않도록 미디어와 일반 팬들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미디어 기구들의 자체 규약이나 내규에 여성연예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여론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3

보고서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 가능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언급하고 논평을 마치고자 한다. 여성 연예인들의 인권침해를 직접 가했거나, 혹은 명백히 그 사안을 강요, 혹은 강제한 사안들이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가해 주체에 대한 가중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중처벌은 법적인 처벌이라기보다는 해당 업계로 쉽게 복귀하거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일정한 제재 및 사후 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의 강화를 말한다. 또한 피해를 당한 여성연예인들을 정신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의 참여와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수적이다. 특히 여성연예인들을 위한 전문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은 인권침해에 대한 재활뿐 아니라 연예활동 전체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별 연예기획사 차원에서 일임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연예인의 인권문제는 해당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여성의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대중문화의 수준을 가늠하는 문제이다. 사실 여성 연예인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이전에 한국 사회 혹은 연예산업에 관련된 당사자들(연예기획사, 방송사, 광고업계 등) 사이에서 문화적이고 윤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남성 가부장사회의 규율에서 오는 여성 연예인 인권침해의 경우는 제도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윤리적이고 문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는 자발적인 노력과 성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침해실태 및 개선방안

박형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연예산업의 중요성

오늘날 연예산업은 거대한 콘텐츠 산업으로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산업이 중국, 일본, 동남아를 넘어서서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에서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예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제조업과 관광 등 다른 분야에도 좋은 연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연예산업의 중요성은 이처럼 문화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연예산업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한류와 같은 연예산업의 화려함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도, 부정적인 답변도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연예산업의 성장과 함께 연예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연예인들, 특히, 여성연예인들의 취약한 인권실태를 살피는 동시에,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연예산업과 여성연예인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찾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예인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이유

이미 오늘 발표한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다양한 원인이 담겨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중복되는 내용은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예산업에서 연예

인과 매니지먼트사는 핵심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의 관계는 연예산업의 중요한 축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의 관계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예산업의 또다른 핵심 구성요소인 방송사, 제작사 등과의 관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즉, 연예산업은 이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 사이의 인권침해가 일시적으로 해결되어도 비슷한 유형의 침해가 되풀이 되는 것은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연예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간의 잦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이 공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다 큰 차원에서 제작사, 방송사 등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과의 관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연예산업업계가 스스로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큰 틀의 질서를 잡는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 연예매니지먼트사, 제작사, 방송사 등 핵심 이해관계자간의 협상력이 대등하지 못한 결과, 서로 이익이 되는 거래보다는 일방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예산업 질서 확립과 산업 진흥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

연예산업은 범위가 매우 넓고 이해관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변화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강한 영역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연예매니지먼트산업은 특별한 법적 규제없이 자유업으로 영위되어 왔는데, 자유업으로 영위되는 동안 한류라는 독특한 해외진출 성과도 거두는 등 상당한 양적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연예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질적 성장이 매우 중요한데, 그 질적 성장의 주요 지표가 바로 인권 보호, 공정거래, 저작권 보호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연예산업의 급속한 양적 팽창과는 달리 질적 성장은 더디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간의 분쟁이 대부분 이러한 더딘 질적 성장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비단 연예인과 매니지먼트간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연예인, 연예매니지먼트사, 제작사, 방송사 등 연예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관계에 모두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권위가 조사한 보고서에 그러한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권 보호, 공정거래 등 질적 성장의 문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한 분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입법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작년 정부는 국회와 공동으로 ‘연예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 ‘연예산업의 취약한 구조와 인권’ 포럼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고 작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산업 표준전속계약서’ 공시를 비롯, 현재는 ‘(가칭)연예산업 진흥에 관한 입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입법안과 관련, 입법의 기본 목적은 연예산업의 질서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 기반 구축으로서, 입법안의 범위는 연예매니지먼트와 연예인의 관계를 포함하는 연예산업 전체가 될 예정입니다. 입법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예를 들면, 연예매니지먼트 등록제 도입, 연예인/연예매니지먼트사/제작사/방송사 등 연예산업 핵심 이해관계자간의 표준계약서 도입, 전문 분쟁해결절차 도입, 미성년인 연예인 보호 강화,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입법안이 거의 마련된 상태로 국회와 협의하여 금년 상반기 국회에 발의하여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인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개선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훈련생, 신인, 원로 등 취약 계층 연예인들은 물론, 촬영,

조명 등 기술 스태프들에 대한 복지 및 처우 개선이 연예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연예산업의 발전을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작년 하반기 실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시범적으로 대중연예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이버 대중문화지원센터를 구축,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 등 법률정보, 취업 및 전직 상담, 우울증 등 건강정보, 세무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오프라인상의 대중연예인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결론

우리나라 연예산업은 그 성장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 연예산업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킬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연예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연예인, 연예매니지먼트사, 제작사, 방송사 등 어느 한 요소가 잘 보호되고 성장한다고 해서 연예산업 전체의 발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이해관계자간 협력 시스템이 중요한데, 우리 연예산업에는 아직 이러한 협력 시스템 구축은 원활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연예인들이 제작자로부터 약속된 출연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연예산업 내 신뢰와 파트너십 관계 유지가 매우 어려워지고 결국 연예산업 발전이 후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산업의 질서확립과 산업 진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업계에서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 연예산업을 바라보고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 3

여성연예인 인권개선을 위한 과제 2

- 여성연예인 인권관련 당사자들의 과제를 중심으로
 - 문제갑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정책위원회 의장)
: 별첨
 - 김승수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PD)
: 별도 자료 없음

▶▶▶▶ 토론 4



여성연예인 인권개선을 위한 과제3

- 여성연예인 인권개선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 김대오 (노컷뉴스 기자) : 자료 별첨